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

(아동권리과, ’21. 11. 3.(수))

1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추진

□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개선

○ 사회적거리두기(4단계)에서 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’ 발표에 따라 ‘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’ 개편 필요

-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근간으로 하되 **아동복지시설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**

2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방향(중수본)

□ 사회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방향

○ 전국민 70% 이상 접종 등 1차 개편 추진(11.1 시행)

-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기본으로 하며, 노인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 **백신접종자만 면회·방문 등 허용**

<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완화 절차>

○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평가를 참고하여 중대본에서 결정

구분	1차 개편	2차 개편	3차 개편
방향	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	대규모 행사 허용	사적모임 제한 해제
전환 기준	① 예방접종완료율 (1차 70%, 2차 80%) ② 중환자실·입원병상 여력 (>40%) ③ 주간 중증환자·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, 재생산지수 등 ※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		

⇒ 아동복지시설은 ①코로나19 확진 시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적은 점, ②거주 아동 중 백신접종 대상(자율접종)과 12세 미만 접종제외 대상이 함께 거주하는 점, ③거주아동 인권 보호 등을 감안 **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별도로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추진**

3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

□ 아동복지시설 특성에 따른 개편 방향

< 개편방향 >

◇ **아이들의 일상을 최대한 회복하는 방향에서 면회 · 외박 · 외출 허용**
◇ **시설 내외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허용**
◇ **백신접종 완료자도 돌파감염 등 대비 마스크 등 개인 방역 철저**
◇ **집단 거주시설로 확진자 발생 시 재확산 차단 필요**

○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은 **학교생활 등 학업능력을 유지**하고, **자립준비, 원가정 복귀(부모와의 면접 등) 준비** 등을 위해 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**아동이 활발한 활동을 지속**하도록 할 **필요**

□ 아동복지시설 내 감염 위험요인

○ **(외부출입자)** 시설 종사자, 자원봉사자 등 출입에 따른 감염 우려

○ **(학교 등 이용 아동)** 아동의 외출 외박 등으로 인한 감염 우려

○ **(부모 등)** 면회 등 부모-아동간 교섭 시 감염 우려

○ **(확진자 발생 시)**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 우려

4 세부 항목별 가이드라인 개편

□ 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 외부 출입자 관리

○ **(시설 종사자) 시설종사자 88.8% 백신접종 완료**('21.9월말 기준), **미접종자**에 대한 **PCR 검사(월 1회 이상)**로 **감염 차단**

* (지자체) 종사자 PCR 검사 및 모니터링 추진

○ **(자원봉사자) 자원봉사자 백신접종 완료자 출입 가능토록 하여** 시설 내 **프로그램 수행 가능**(전국민 70% 이상 백신접종 완료)

- 다만, **미접종자 출입**은 **제한**하되, **PCR 검사결과 음성인 자**(48시간 이내)**에 의한 자원봉사 가능**

○ **(기타 외부 출입자) 백신접종 완료자 출입 가능, 미접종자 PCR 검사결과 음성인 자**(48시간 이내) **출입 가능**

○ **(체온 측정 및 출입자 명부)** 시설종사자 등 **외부출입자의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체온 체크 지속적으로 작성** 필요

□ **면회·외박·외출 관련**

※ 면회, 외박·외출 등을 실시하는 경우 **마스크 등 개별 방역조치** 및 **외출 후 손 씻기** 등 **코로나 감염증-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**

○ **(면회·외박)** ① 부모 등-보호아동 간 면회·외박 시 **부모 등이 백신접종(또는 PCR 검사결과(최근 48시간 이내) 음성판정)자인 경우 아동과의 면회·외박 가능**

② 시설 **관리자의 판단**에 따라 시설 내 프로그램, 행사 등 필요에 따른 외박(외부참가자 없는 경우) 허용

③ 필요시 기타 학교 행사 등 외박이 필요한 사유에 따라 **지자체 또는 관리자가 ①, ②에 준하여 판단기준 별도 마련**

⇒ **면회·외박 아동**에 대해서는 **지역사회 및 시설 내 감염상황을 고려**하여 **시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후 PCR 검사 가능**

○ **(외출)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 외출 가능**

- 다만, 「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」 방향(전국민) 및 방역 수칙 준수

○ **(면회, 외박, 외출자 복귀 후 관리)** 면회 등 복귀 후 **체온 측정 등 모니터링** 지속

□ 확진자·밀접접촉자 발생 시 재확산 방지 조치

○ 「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」에 따라 **시설 내 확진자는 일시적으로 증가**할 것으로 **추정**됨에 따라 **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**

○ 시·군·구-시설 간 **비상연락 체계**, 환기, 소독, **방역점검 등 현행 체계 유지**

○ **밀접접촉자 격리 증가**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서는 **시설 내 또는 외부 연수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**한 **1인 격리공간 사전 준비 필요**

※ 아동복지시설 외부 출입자 관리, 면회, 외출·외박 일부 제한 등 **개편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**하여 **운영할 수 있음**

5 기본 방역수칙 준수(현행 체계 유지)

1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

□ 시설 이용자,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·홍보 지속

○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, 단계적 일상회복 등 교육

○ 코로나19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

* **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**

□ 환경 위생 관리

○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, 손 세척제(액체비누, 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

- 손 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
-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
ㅇ 시설 내 **주요 공간의 청소, 소독 및 환기 강화**
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*에 대한 소독 강화(일 2회 이상)

  *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,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

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(일 3회 이상 자주)

  * 환기는 상시로 하되, 에어컨 가동 시,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(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'에어컨)

ㅇ 시설 내 마스크, 체온계,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

- 종사자,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

2 시설 입소·출입 시 관리 강화

□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 후 출입 안내

□ 시설 이용자·거주자·종사자 등 **1일 2회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**

⇒ 시설 내 **발열, 기침 등의 증상**이 나타날 경우,

(1) **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**, 방문자는 출입 금지

(2) **거주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**

□ 다음과 같은 **시설 종사자 또는 거주자는 출근 또는 외부활동 중단할 것**

①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**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**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등 외부활동을 중단**할 것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**타인과의 접촉** 및 **외출을 자제**하고, 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

⇒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
◈ (참고)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[유증상자]

1. **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**
2. **집**에서 **충분히 휴식**을 취하시고 **3-4일 경과를 관찰**하여 주십시오.
3. **38도 이상 고열**이 지속되거나 **증상이 호전되지 않으**면 ① 콜센터, 보건소(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 시 **자기 차량**을 이용하고 **마스크 착용**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**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** 여부를 알려주세요

② **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**는 **2주간 출근 금지 (재택근무, 온라인 근무)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**할 것

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·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(이용중단) 조치를 할 때 **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**

* (예시) 근로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/ 어린이 등 : 결석 시 출석 인정

ㅇ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,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**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** 사전에 적극 **안내하고 관리할 것**

ㅇ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, 노인, 임신부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

ㅇ 의심환자 발생 시,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
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3 접촉의 최소화

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**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**

*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,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,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

-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
- **종사자 간 식사, 모임,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**

ㅇ 출·퇴근 시간, 식사시간 교차 실시 * 유연근무제,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

ㅇ 실내·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

ㅇ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(띄워 앉기, 가림막 등 포함)

ㅇ 시설 내 식사 이용 시 가림막 설치, 띄워 앉기, 소숙사별 식사 준수

4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

ㅇ **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**

-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, **전용물품**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**사용**하기

ㅇ **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**하도록 함

* 보건소 도착 전,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,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

-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·도(보건소)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
- 거주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

ㅇ (의심)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

ㅇ (의심)환자와 접촉한 **거주자・종사자**에 대한 **모니터링**

-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

-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

- 단 발열, **호흡기 증상**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**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**

  * **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** 보건용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,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

6 행정사항

○ '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' **즉시 시행(11.3~)**

  * 세부 「코로나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」은 「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」에 맞춰 추후 시행 예정

○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**시설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 점검**

  - 비상연락체계, 외부출입자명부, 종사자·아동 등 출입자 체온체크 등 모니터링, 환기, 소독 등

○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서는 **1인실 격리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**

○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'아동복지시설 특성에 따른 개편 방향'의 취지와 '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' 및 '코로나19 방역지침', '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'에 따름